

#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 제227회 이사회 회의록

| 구분   | 이사 | 감사 |
|------|----|----|
| 임원정수 | 9인 | 2인 |
| 재적임원 | 9인 | 2인 |
| 참석임원 | 8인 | 2인 |

1.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14:00~16: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11월 22일)

2.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피어선빌딩 별관 301호

###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8) : 이계안, 김병환, 김영미, 김지훈, 박승현, 선권수, 이대화, 이자희
  - 감사(2) : 안상우, 정재흠
- 결석 임원
  - 이사(1) : 김우영
  - 감사(0) :
- 배석 교직원
  - 법인(4) : 사무국장 박재순, 차장 김정웅, 과장 조승래, 담당 이현민
  - 학교(2) : 총장 이동현, 교무처장 정선호

### 4. 안건

- 1) 규정 제·개정 건
- 2) 2024-1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 계획 승인 건
- 3) 기타 안건

### 5. 개회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피어선빌딩 별관 301호에서 이계안 이사장(이하 '이사장')의 사회와 사도신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가 540장을 다 같이 부르고, 김병환 이사가 대표기도하다. 이어 다 같이 성경 말씀 잠언 20장 1절~14절을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예배를 마친 후 이사장이 성원 여부를 묻자, 박재순 법인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28조에 근거, 이사 재적인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6. 전차 회의록 보고 및 채택

사무국장이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2023.10.31.자로 개최된 제226회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심의·보고 사항을 낭독한 후, 이사장이 참여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이견 유무를 물어 없음을 확인하고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제226회 이사회 회의록 채택을 만장일치 가결하다.

## 7.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사무국장이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변동 사항이 없음을 보고하다. 이어 법인 현황 및 위원회 현황을 서면보고로 대체 보고하다.

## 8. 심의사항

### 1) 규정 제·개정 건 (「대학원 학칙」 개정(안))

이사장이 규정 제·개정 안건(「대학원 학칙」 개정)을 상정하다.

정선호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이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여 「대학원 학칙」 개정 사유로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의2 제4항이 2023년 9월 19일 기준으로 일부 개정되었음과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주요 사항에 근거하여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확보, 교원 논문 실적(또는 준하는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반드시 2024.02.29.까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이유로 제10장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 확보기준의 제43조와 제44조를 신설하고 기존 ‘장’과 ‘조’가 각각 제11장 준용규정 제45조와 제46조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대학원 학과 및 전공 신설과 관련하여 「대학원 학칙」 [별표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표의 일부 학과 및 전공 명칭의 변경·신설과 [별표2] 학위의 종류 표의 일부 수여학위 명칭의 변경·신설이 있음을 보고하다.

김병환 이사가 법 개정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하자, 교무처장이 제공된 자료 10페이지 2번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주요 내용'을 가리키며 기존에 학과나 전공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확보율을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해당 학과의 교원 업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답변하고 이번 변경 사항으로 교원 확보율은 폐지가 되었고 신설 학과의 경우 기존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있던 내용들을 학칙에 넣어 반영하기로 하였기에 기존에 학칙 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추가하였으며 관련하여 각 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 실적 확보기준을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논문 2편,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의 경우 3편, 예체능 계열의 경우 2편으로 명시하는 항목이 되었다고 답변하다.

선권수 이사가 박사 과정과 관련하여 타 대학의 기준을 비교해 보았는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평택대학교가 타 대학에 비해 학과를 신설할 때 참여하는 전임교원의 논문 실적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답변하다. 선권수 이사가 그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자, 이동현 총장(이하 '총장')이 교육부 규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신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의 기조가

신설 조건의 완화를 추구하기에 대학도 거기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였다고 답변하다.

김병환 이사가 ‘동물매개치료’ 전공을 ‘웰다잉’ 전공으로 변경한 건지 질의하자, 총장이 ‘동물매개 치료’ 전공은 없애고 ‘웰다잉’이라는 새로운 전공을 신설하였으며 두 과정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다. 현재 웰다잉과 관련하여 법이 생기고 수요가 생길 것이라 하여 웰다잉 협회와 MOU도 체결하고 대학원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진행하였다고 첨언하다.

이계안 이사장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김영미 이사와 이대화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2) 2024-1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 계획 승인 건

이사장이 2024-1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 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하다.

교무처장이 작성일 현재 본교 전임교원 수는 총장 제외 127명이고, 2024.03.01.자 본교 전임교원 추정 수는 총장 제외 125명(정년퇴직자 2명 제외) 임을 밝히고, 본교 학생(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66.49%, 교원확보율 76.06%이며, 2024-1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은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교원 수급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총 9개 학과에서 교원 수급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1개 학과에 대한 교원 수급만을 보고한 건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전임교원 신규 채용은 스마트콘텐츠학과와 지난 학기 미채용 교원에 대한 건임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지난번에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채용 조건의 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충 설명을 요청하자, 교무처장이 인공지능 분야로 한정된 부분이 있으며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다고 답변하다. 이사장이 지난번과 동일하게 공고를 내고도 못 뽑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다음 정기 이사회에 대학의 급여체계의 한계 혹은 개선책에 관해서 대학 측의 입장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채용 제도를 보완하거나 체계를 바꾸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김병환 이사가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이 66.5% 정도 되는데 해당 수준이 대학기관인증평가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학기마다 정년 퇴임하는 교원이 있어 수급과 관련한 보완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김병환 이사가 자료 기준으로 면직 6명, 면직 예정 2명 총 8명 중 채용 1명이면 7명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1명만 모집한다고 하여 이런 상태로 유지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질의였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하자, 교무처장이 차기 이사회 때 추가 교원수급계획을 상정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이사장이 12월 이사회에는 2024학년도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전망치를 이사들에게 보고하기를 교무처장에게 요청하다. 총장이 이번 이사회에서 상정된 초빙 계획을 승인하면 추후 별도 재승인 절차 없이 최종 채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사장이 참여한 전체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4년도 1학기 교원 신규 전임교원 채용계획 승인에 더하여 총장이 요청한 부분까지 반영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대하여 김지훈, 이자희 이사에 동의와 이대화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8. 보고사항

① 사무국장이 학교법인의 주요 소송 및 징계 경과를 보고하자, 박승현 이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2023누35854)에 대해 경위와 판결 결과를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대해 사

무국장이 지난 2021년 선OO 교수의 OOOO 비위행위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취소가 난 사건으로 법인은 행정소송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법인이 패소를 하였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인 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소청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답변하다. 이사장이 해당 교수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법인에서도 대법원 상고에 대응하는 중대한 상황으로 법인 임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되어 보고드린다고 부언하다. 선권수 이사가 해당 교수의 비위행위가 대학에 대한 해교 행위로 파급력이 높다는 점이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다.

② 사무국장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피어선빌딩이 지난 2020년 서울시에서 초창기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명목으로 현대 건축자산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규제·권장 사항 등이 있음을 보고 하자, 선권수 이사가 해당 건에 대해 법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추후 경과를 보고 하겠다고 부언하다. 총장이 경기도 안성시 승두리 토지 활용에 대해 교내 구성원 및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는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자, 이사장이 해당 건은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덧붙여 해당 토지의 세금 감면과 공시지가 조정 문제 등을 대학과 법인 그리고 감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잘 대처하겠다고 하다.

③ 총장이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하다.

## 9. 폐회

이사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선권수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16시 00분에 이계안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3. 11. 30.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 계 안

이계안

이 사 김 병 환

김병환

이 사 김 영 미

김영미

이 사 김 우 영

이 사 김 지 훈

김지훈

이 사 박 승 현

박승현

이 사 선 권 수

선권수

이 사 이 대 화

이대화

이 사 이 자 희

이자희

감 사 안 상 우

안상우

감 사 정 재 흠

정재흠

